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승희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승희학원(강동대학교)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승희학원(강동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 고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2. 학교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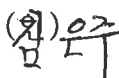
붙임 :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 1부. 끝.

2016년 4월 15일

학교법인 승희학원

감 사 김 세 민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5700호)

감 사 김 은 주 

피감사 기관장

2016년 4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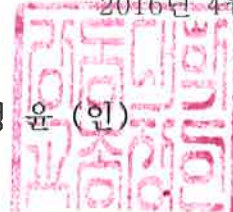
학교법인 승희학원
이 사 장 (인)



피감사 기관장

2016년 4월 15일

강동대학교
총 장 류 정 윤 (인)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승희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승희학원(강동대학교)의 201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승희학원(강동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승희학원(강동대학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학교법인 승희학원

감사 김세민 (인) 김세민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5700호)

감사 김은주 (인) 김은주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법인사무국직원

성명 이유헌 (인) 이유헌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사무처장

성명 김상덕 (인) 김상덕